

 신안산대학교	지역협력지원센터 운영 규정	규정번호 3-1-16 제정일자 2019. 4. 30. 개정일자 2024.3.20. 책임부서/팀·계 대외협력처
---	-----------------------	---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산학협력관계 구축 및 내실화를 위해 설치 한 지역협력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소속) 센터는 신안산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대외협력처 산하 조직으로 둔다. <개정 2023.3.30., 2024.3.20.>

제3조(조직) ① 센터의 운영은 대외협력처에서 총괄한다. <개정 2023.3.30., 2024.3.20.>

② 센터의 행정 및 사무 처리를 위해 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4조(센터장)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 교원 중에서 대외협력처장의 추천에 따라 총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23.3.30., 2024.3.20.>

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의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.
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업무) 센터는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지역사회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업무
2. 지역사회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
3. 산학협력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
4. 대내외 관계 부서와의 협력, 연계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센터 운영 목적에 부합되는 관련 업무

제6조(운영위원회의 구성)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 위원회 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③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,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 -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 - ⑤ 위원회에는 센터장이 임명하는 간사를 둘 수 있다.
 -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주요사업의 계획 및 운영
 2. 예산 및 결산 심의
 3. 규정 개정 및 성과지표 달성을 위한 사항
 4. 기타 센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 5.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7조(위원회의 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(재정) ① 센터의 재정은 센터운영비, 각종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.

② 센터의 회계연도는 대학의 회계연도와 같다.

제9조(자문위원) 센터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, 자문위원은 센터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1. 자문위원은 지역사회와 유관기관 인사를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한다.
2. 자문위원은 센터가 주관하는 산학협력협의체의 외부위원으로 위촉된다.

제10조(운영세칙)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04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